

| | |
|-----------|----------------|
| 의안번호 | 제 199호 |
| 의결 연월일 | 년 월 일 (제 회) |

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
|-------|-------------|
| 제 출 자 | 충 청 북 도 지 사 |
| 제출연월일 | 2023년 3월 7일 |

법무혁신담당관 심사를 마침

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
|----------|-----|
| 의안 번호 | 199 |
|----------|-----|

제출연월일 : 2023년 3월 7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체계적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개별조례가 존재하지 않은 새로운 전략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 조례 제정('03. 1. 3.) 후 장기간이 경과하여 현실과 맞지 않은 용어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전략산업에 관한 정의 변경(안 제2조)
- 전략산업 육성계획 수립 조문 정비(안 제5조)
- 전략산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관련 조문 정비(안 제6조~제18조)
- 수행기관 등 지원 대상 신설(안 제20조)
- 지도·감독, 전략산업 육성 유공자 포상 등(안 제21조 및 제22조)

3. 의안전문 : 불 입

4. 신·구조문 대비표 : 불 입

5. 관계법령 발취 : 불 입

6. 비용추계서 : 불 입

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래산업을 선도할 충청북도의 전략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전략산업”이란 생산·수출·고용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망산업으로서,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육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산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전략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충청북도의 전략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전략산업 육성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전략산업을 체계적

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전략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전략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충청북도 전략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전략산업 육성의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사항
3. 산업체와의 기술협력, 공동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4. 전문인력 양성 시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과학인재국장, 경제통상국장, 투자유치국장, 바이오식품의약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도내에 소재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공사·공

단, 연구기관 또는 기업지원기관의 장

2. 도내에 소재하는 대학의 산학협력단장협의회회의 장

3. 도내에 소재하는 전략산업 관련 기업의 대표 또는 기업협회의 장

4. 그 밖에 도지사가 전략산업의 육성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회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촉직 위원회의 임기는 해당 기관, 법인 또는 단체의 장으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이 조에서 “해당 안건”이라 한다)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鑑定)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개최할 수 있다.

④ 제7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촉직 위원이 불가피하게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 중에서 해당 위원이 지정하는 사람을 대리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기업인 등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4조(간사)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사람으로 한다.

제15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6조(수당 등) ①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과 제12조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의견을 제출한 관계 전문가, 기업인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당 등의 지급방법,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적용 또는 준용한다.

제1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존속기한) 위원회는 2026년 6월 30일까지 존속한다.

제19조(전략산업 육성사업의 추진) ① 도지사는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실태 및 기술·장비·인프라 등 수요 조사
2. 대학, 연구기관 및 기업 등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연구지원 시설·장비 구축
3. 신기술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
4. 산업인력 양성
5. 품질인증 지원
6. 신사업 발굴 기획
7. 산·학·연·관 협력체계 구축
8. 국내외 산·학·연·관 교류·협력사업 지원
9. 그 밖에 도지사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에게 수탁한 업무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수행기관 등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19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또는 산학연 협력 관련 협의회 등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연구기관 또는 기업지원기관
4.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5. 그 밖에 도지사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련 기관·기업·법인 및 단체

제21조(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제19조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거나 제20조에 따른 지원을 받는 자(이하 “수탁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사업 수행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사업 수행에 관하여 보완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등에게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포상) 도지사는 전략산업 육성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기업·법인 및 단체에게 「충청북도 포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발취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타. 중소기업의 육성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우리도 산업육성정책 추진을 고도화하고, 지속적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필요한 지원임

2. 비용 발생 요인

- 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 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수행

3. 관련조문

- 안 제5조(전략산업 육성 종합계획의 수립 등)
- 안 제6조(전략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전략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 전략산업육성위원회 운영

나. 추계 결과

- 전략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 100,000천원
- 전략산업 육성위원회 운영 : 50,000천원

다. 재원조달방안 : 도비(자체재원)

5. 연도별 비용추계서 : 붙임

6. 작성자 : 과학인재국 과학기술정책과장 변인순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 구 분 | | 1차년도 (2023) | 2차년도 (2024) | 3차년도 (2025) | 4차년도 (2026) | 5차년도 (2027) | 합계 |
|---------------------|------|----------------|----------------|----------------|----------------|----------------|---------|
| 세 입 | | | | | | | |
| 세 출 | | 10,000 | 110,000 | 10,000 | 10,000 | 10,000 | 150,000 |
| 전략산업 육성 종합 계획 수립 | | | 100,000 | | | | 100,000 |
| 전략산업 육성위원회 수당 |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50,000 |
| 재원조달 | | | | | | | |
| 자체 수입 | 소계 | 10,000 | 110,000 | 10,000 | 10,000 | 10,000 | 150,000 |
| | 세외수입 | 10,000 | 110,000 | 10,000 | 10,000 | 10,000 | 150,000 |